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289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장진호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민

변론 종결2021. 10. 5.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차용한 금액에 대해 약정한 상환일자에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D의 임직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하면 40일 만에 이익금으로 100만원이 원금과 함께 나오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라는 투자권유를 받고, C의 투자설명회를 들은 후 원고의 아들 F 명의로 2018. 3. 22. 15,000,000원, 2018. 3. 29. 22,000,000원, 2018. 6. 19. 20,000,000원, 2018. 7. 23. 10,000,000원, 2018. 10. 15. 3,000,000원, 2018. 11. 2. 10,000,000원, 2018. 11. 5.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후 2019. 3. 26.부터 2019. 5. 5.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F 명의로 된 합계 136,662,086원의 각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차용금 지불각서에는 "D는 작성된 상환예정확인서와 동일하게 지정 계좌에 입금 확인된 차용금액에 대하여 상환의 의무를 갖습니다."라는 내용과 "D는 위 차용금액에 대해 작성된 배당일자에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9. 3. 26.	G	2019. 3. 26.	2019. 5. 5.	40일 기준 3%	19,487,171
2019. 4. 11.	F	2019. 4. 11.	2019. 5. 21.	40일 기준 3%	10,000,000
2019. 4. 13.	F	2019. 4. 13.	2019. 5. 3.	40일 기준 3%	13,709,300
2019. 4. 27.	F	2019. 4. 27.	2019. 6. 6.	40일 기준 3%	48,393,829
2019. 5. 2.	F	2019. 5. 2.	2019. 6. 11.	40일 기준 3%	25,000,000
2019. 5. 5.	G	2019. 5. 5.	2019. 6. 14.	40일 기준 3%	20,071,786
합계	136,662,086				

라. C는 위 D와 별개로 2017. 10. 16.부터 2019. 9. 26.까지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마. 피고는 발명자를 C로 하여 'H'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I일자 특허출원을 하여(출원번호 J) 2019. 2. 14. 특허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특허번호 K로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이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바. L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3. 22. 접수 M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후 N가 다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9. 5. 접수 O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다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12. 26. 접수 P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사. C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와 D의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Q, R)에게 "본인은 D 및 피고, 그리고 본인에게 투자 및 대여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요청받았으나, 기 추진했던 사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요청에 대해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 및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에 ① 피고의 충북음성공장의 모든 자산과 영업권 및 피고에 관련한 모든 권리, ② 피고의 빙온 젤아이스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과 상표권, ③ S 및 아들 T, 그리고 그 외 가족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의 모든 권리, ④ 기타 S와 피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무비품, 회사의 운영관련 서류 일체, ⑤ S의 딸 L 명의의 빙온 젤아이스 특허권, ⑥ 기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0, 11,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C와 피고 사이에 2018. 3. 23. 체결된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위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의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과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특허권 이전등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가담자가 약정한 돈의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투자자들이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가담자의 권유와는 별도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투자자들 상호간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직접 또는 그 임직원을 통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에게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C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2018. 8. 23. 이전에 C에게 이체가 완료된 67,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23,000,000원은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 당시 아직 이체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8. 2.경 C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순차적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라고 할 것이다.2)

나.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와 피고 사이에 2018. 8. 23.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인이 피고이고, 발명자가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자는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1항) 이와 같은 발명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한 두뇌활동의 결과물로 그 창작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때 특허법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특허법 제37조 제1항)을 고려하면,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인 피고는 발명자인 C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한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8. 23. 무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원권 양도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2) C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의 성립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2018. 8. 23. 무렵 C의 적극재산으로 별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만 하더라도 최소한 67,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는 이 사건 출원권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C와 피고 사이의 2018. 8. 23. 체결된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출원권 양도계약 당시 공동담보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2018. 8. 23. 체결된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와 피고 사이에 2018. 8. 23. 체결된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발명을 한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특허 출원권을 가지는 C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권이 사해행위 이후 L, N 명의로 순차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C 명의로 이를 이전하여 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특허권이 가지는 책임재산의 가치에 본질적인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함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기선

판사박수진

판사현재언

별지

1) 주위적 청구취지는 주문 제1, 2항을 모두 구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문 제2항만을 구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약정금 채권을 들고 있고, 위 두 채권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상 이는 선택적 주장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이상, 나머지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020. 9. 2.자 준비서면에서 2018. 8. 23.자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2021. 9. 14.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리인은 "2018. 8. 23.자 특허권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변론의 전 취지로 사실 인정해도 된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